

배당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해야 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지급유보 되는 등 외부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을 정하여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시키고 과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배당소득 지급의제라고 한다.

이렇게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특정시점으로 지급을 의제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이행시키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다음연도 2월~3월 사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배당을 결의하는데, 여러 이유로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지 못한 법인도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배당 결의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지급의제 시기임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결산이 확정된 후 주주총회에서 결산이익에 대한 소득처분(배당)결의를 해야만 배당이 가능한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소득처분(배당)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않은 경우는 그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 세법상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즉, 배당의 경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상법에서도 배당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배당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지급의제시점을 두어 세법상의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 지급의제시기(결의일부터 3개월)에 원천징수 의무 성립함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 후, 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배당을 결의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성립된다.

따라서 2020년 2월(또는 3월) 중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인 5월(또는 6월)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인 6월10일(또는 7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을 추후 임시주총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3개월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역시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제과-277, 2005.12.16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제도46011-10144, 2001.03.19.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며, 이 경우 잉여금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